

2020년 9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임영조(044-201-2131), 서기관 조경규(2136) / 제공일: 9월 24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[전자신문 9.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☐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는 주류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, 국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- 현재 전통주산업법,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은 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**주종\***에 관계 없이 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, ②농업인 인접사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다만, 희석식소주, 맥주, 위스키, 브랜디 주종은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음
- ☐ 9월 24일 전자신문 12면 <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... 전통주 '온라인판매 기준' 빈축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

### 언론 보도내용

- ☐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.....전통주 '온라인 판매기준' 빈축
  -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통주 범주에 들지 않는 '진'과 '애플사이다' 등이 전통주로 등록 돼 포털사이트와 e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주류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



##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☞ 기사내용과 관련,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□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·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동법에 따라 주종\*에 관계 없이 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, ②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·군·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\* 다만, 희석식소주, 맥주, 위스키, 브랜디 주종은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음

○ 한편, 주세법으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.

□ 기사에서 언급된 '백세주', '산사춘' 등은 전통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통주에 허용된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.

○ 다만, 동 제품에 대해서도 국산농산물 원료 구매, 품질 향상을 위한 R&D, 수출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## 참 고

## 전통주의 개념

### □ '법률상 전통주'의 개념

- 「전통주산업법」 및 「주세법」상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의미

| 구 분   |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천기관  | 면허기관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민속주   | 주류부문 <u>무형문화재 보유자</u> 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·도지사 | 국세청<br>(세무서) |
|       | 주류부문 <u>식품명인</u> 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지역특산주 | <u>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| <u>재지 관할 시·군·구 및 그 인접 시·군·구에서 생산된 농산물</u><br><u>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</u> 로서 시·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<br>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|       |              |

※ 법률상 전통주는 주세경감(50%), 시설기준 완화,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혜택

### □ '전통주 등'(광의의 전통주)의 개념

- '법률상 전통주' 외에 '전통주 등'에 '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·발전시킨 우리술'까지 포함시켜 정책 대상을 확장

<“전통주 등”의 정의(법 제2조 제3호)>

- “전통주 등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.
  - 가. 전통주
  - 나.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·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

- 12개 주종 중 '예로부터 전승되어온 술로 보기 어려운 주종(희석식소주, 맥주, 위스키, 브랜디)를 제외한 8개 주종\*의 국내산 술을 '전통주 등'에 포함

\* 탁주, 약주, 청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

- 서울장수 등 대중적인 일반 막걸리는 대부분 '전통주 등'에 포함